

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9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8. 2. 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 제안이유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6항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제4조 1,2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및 산업단지 시설의 유지관리와 입주기업체의 건전한 육성발전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체협의회로 관리업무를 위임 및 위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함

## 주요골자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에 의거 현도지방산업단지의 위임·위탁 기관을 청원군수에서 현도지방산업단지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

## 신구조문 대비표(따로붙임)

## 근거법령(따로붙임)

-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 6항
- 산업단지관리업무지침 제4조 1,2항
-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

##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6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·위탁기관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일련 번호	단 지 별	위임·위탁 기관	근거 및 적용법규
3	현도지방산업단지	현도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체협의회	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